

의안번호	제332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7월 4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32
----------	-----

제출연월일 : 2023년 7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의 전시·컨벤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청주오스코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주오스코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 시설의 이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시설 이용료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 별표)
- 시설 이용의 제한 및 이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의 위탁과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전시·컨벤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청주오스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주오스코의 설치 및 위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시·컨벤션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주오스코(OSCO: Osong Convention Center, 이하 “오스코”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오스코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104-2에 둔다.

제3조(사업) 오스코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및 연회
3. 시설, 부대장비 및 부대·편익시설의 임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허가) ① 오스코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료) ①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료의 감경) 도지사는 안정적인 고정수요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시장 및 회의실 이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
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주차관리) 도지사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오스코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도지사가 전시·컨벤션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관리·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오스코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오스코의 관리·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 이용료 징수기준(제5조 관련)

1. 전시장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금 액	비 고
장소별	전시장(1층)	1,300원 ~ 2,800원/m ²	1일(08:00~20:00)기준 (기본관리비 포함)
할인 할증률	월별 차등률	1월, 2월, 7월, 8월, 12월	30% 범위에서 할인
	규모별 차등률	분할 이용시	20% 범위에서 할증
	기간별 차등률	30일 이상 전시장 이용시 (단, 1월, 2월, 7월, 8월, 12월에 한함)	40% 범위에서 할인
시간외 사용 (초과 1시간당)		1일 이용료의 10%	시간외 이용료의 합계는 1일 이용료를 초과하지 않음

2. 회의실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이용시간대	09:00~ 12:00	13:00~ 17:00	18:00~ 21:00	09:00~ 17:00	13:00~ 21:00	09:00~ 21:00
	대회의실(2층, 1개실)	시간당 350원 ~ 1,150원/m ²					
중회의실(2층, 4개실)	시간당 400원 ~ 1,150원/m ²						
소회의실(2층, 4개실)	시간당 400원 ~ 1,150원/m ²						
시간외 사용 (초과 1시간당)	1일(09:00~21:00) 이용료의 10% (시간외 사용료의 합계는 1일 이용료를 초과하지 않음)						

- ※ 장비 등 기타물품 이용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 ※ 행사 개최 전후로 준비 및 철거를 위하여 무료 이용시간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다.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104-2
- 면적 : 연면적 39,725㎡ / 건축면적 21,716㎡(지하1층, 지상2층)
- 주요시설 : 전시장(10,031㎡), 회의실(9개 / 3,830㎡), 부대시설 등

2. 비용 발생 요인

- 청주오스코 관리·운영 위탁비
 - 위탁사무 : 전시관 관리·운영, 각종 전시회 및 회의 유치·개최·홍보·마케팅 등

3. 관련조문

- 안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청주오스코 관리·운영 위탁

나. 추계 결과 : 총 140억 원 요인 발생(3년 간)

※ 근거 : 충북 청주전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비(충청북도 50%, 청주시 5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구분	1차년도 (2023.10월부터)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9월까지)	계
세출	400,000	1,600,000	6,700,000	5,300,000	14,000,000
민간위탁금	400,000	1,600,000	6,700,000	5,300,000	14,000,000
재원조달	400,000	1,600,000	6,700,000	5,300,000	14,000,000
자체수입					
지방세	200,000	800,000	3,350,000	2,650,000	7,000,000
시군비	200,000	800,000	3,350,000	2,650,000	7,000,000

6. 작성자 : 투자유치국 기반조성과장 정진훈